

중대재해 처벌법 이해 및 대응전략

2026.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감독과 황복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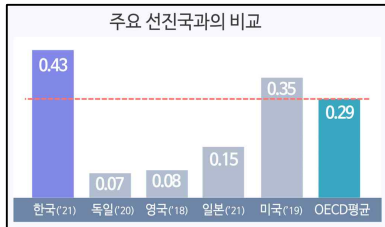
I . 중대재해 현황 및 중대법 제정 배경

II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III . 기업 대응전략

I . 중대재해 현황 및 중대법 제정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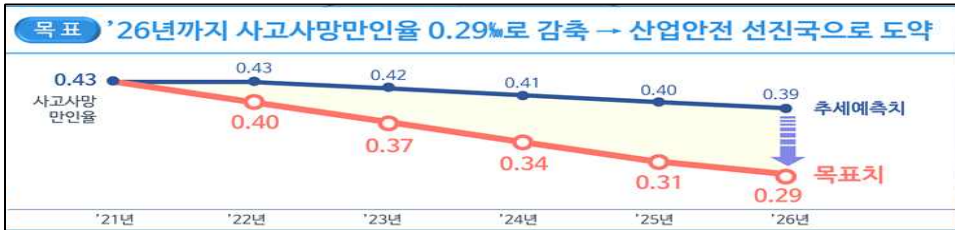
■ 우리나라 사고사망 현황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2019.1.19.공포후 1년 유예기간 거쳐 20.1.16. 시행)
-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 사망 사고 발생(20.4)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
- * 공포 후 1년 후 시행(22.1.27), **50인 미만은 3년 후 시행(24.1.27)**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22.11.30)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규제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
- 2026년 상시 패트롤팀 구성(전국 30,000개소, 부산청 관할 4,709개소) 감독확대 및 업정조치(2025년 2.4만개소 → 2026년 5만개소)

중대재해 현주소 및 목표

중대재해 감축 목표



2023년 사고사망자(812명)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637명으로 78.4% → 2024년, 2025년 사고사망만인율 0.39, 건설업 39.7% 특히, 건설업(356명)에서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량(43.8%)을 차지,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244명, 68.5%)에서 다발

구분(명)	제조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통신편		
	합계	50인↓	50인↑	소계	50억↓	50억↑	소계	50인↓	50인↑	소계	50인↓	50인↑
사망자 수	812	637	175	356	244	110	165	128	37	111	75	36
(비중)	(100%)	(78.4%)	(21.6%)	(100%)	(68.5%)	(31.5%)	(100%)	(77.5%)	(22.5%)	(100%)	(67.5%)	(32.5%)

■ 수사 및 처벌

법규		처벌대상	수사		기소		재판
산안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개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인	노동부 (지청)	▷	검찰	▷	법원
중처법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개인(경영책임자) 법인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개인(행위자)	경찰				
기타	—	—	—				

■ 작업중지 등 기타 불이익

- 재해발생 급박 위험 시 해당 작업 또는 동일 작업 **작업중지**(산안법 제55조) → 심의회(지청) 심의를 받아 해제
- 안전보건진단(산안법 제47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산안법 제56조), 경영책임자 교육(중처법 제8조) 등
- 공표(중처법 제13조), 산재보험료 인상, **감독**, 입찰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의 최대 5배, 중처법 제15조) 등
- **영업정지**(산안법 제159조), **입찰참가자격 제한**(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건설공사 입.낙찰제한 등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법령상 의무 이행 관리상 조치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법인

(위반시 처벌) **중대재해 발생만 처벌**

(처벌수준)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이하 벌금(사망)

* 법인은 50억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보건조치

기계·설비나 위험 물질 등에 대한 안전조치

- 예) 폭발성 물질 제조 시 방호조치 설치 등

원재료·가스·위험작업 등에 대한 보건조치

- 예) 5kg 이상 중량물 안내표시, 손잡이 부착 등

(처벌대상)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법인

(위반시 처벌) **중대재해 미발생도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수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사망)

* 법인은 10억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열사병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II.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시행령 제4조에서 총 9가지 규정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도급, 용역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

□ 중대산업재해

- 가. 사망사고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속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종사자

-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 경영책임자

-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시행령 제4조)

- *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
- * 사업장별 규모와 보유한 기계·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특성 및 여건에 맞게** 구축해야 함
- * **형식적인 서류작성·비치** 보다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이 중요

연 번	조치의무의 내용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반기 1회 점검·조치) *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 권한과 예산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반기 1회이상)
6	산안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반기 1회 점검조치) (산안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회 대체 가능)
8	중대재해 발생 대비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여부 점검(반기 1회)
9	도급, 용역, 위탁시 안전·보건 확보기준·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수급인 산재예방 조치능력 및 기술 평가기준·절차 및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 등)

연 번	조치의무의 내용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점검(위탁가능, 반기 1회 이상)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점검.보고결과, 의무 미이행 확인 시 인력배치, 예산 추가 편성.집행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2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점검(반기 1회 이상) *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교육 미실시 확인시 지체없이 교육이행 지시, 예산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

- ① 사망자 1명 이상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던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기준 마련]



24가지 질병을 직업성 질병으로 규정

-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 상태 물질류, 허가 대상 유해물질, 금속가공유 등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1~13호)
- ② 랩토스피라증,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급성 중독에 준하는 질병(14~24호)

종사자

-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이 된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주

-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 책임자

-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
*예) 기업의 대표이사, 단체 등의 이사장, 기관장 등
 - 형식상 직위·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① 직무, ② 책임과 권한, ③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 사업의 대표자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 형식적으로 안전보건담당이사 등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관련 예산, 인력 조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적용 범위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시행일) 2022. 1. 27.

적용 유예

- ☑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 ☑ 건설업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시행일) 2024. 1. 27.

참고

$$\text{상시근로자} = \frac{\text{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text{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

산정 원칙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
산정 대상 근로자 범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 -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포함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의무 실행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시행령 제4조 제1호)

법령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취지

-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 경영의 핵심 가치로 격상
- ‘안전·보건 정책’의 지속적 개선을 이끌어낼 기반 구축
 - * 목표 → 평가 및 보상 → 조직·구성원의 변화(지속) → 안전을 ‘가치관’과 ‘기업문화’로 정착

실행방법

- 경영책임자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을 경영방침에 반영
- 안전·보건 목표 설정
 - ① 기업의 특성과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기업 전체, 본사, 부서별 목표 설정
 - ② 목표는 반드시 평가와 연계 → 종사자들이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함
 - ③ 목표에는 재해자 수 등 결과지표와 더불어 재해예방활동에 관한 과정지표 포함 (ex: 위험요인 발굴 실적)

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 제2호)

법령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취지

- 기업경영 전반에서 **중대재해예방 체계**의 작동을 책임지고 지속해나갈 **컨트롤 타워**
-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보좌할 **전략 조직**
 - － 경영책임자 직속기관으로 조직 전체의 안전보건 개선을 실현할 실행력, 독립성 확보
(전담조직이 없을 경우 생산성이라는 가치에 종사자의 안전이 잠식될 가능성이 큼)

안전관리... 안전관리,,, 안전관리팀이라고?
안전관리팀이 중요한 팀인지 생각해 본다.
이게 절호의 기회인지, 정리해고의 수순인지 따져본다.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다.

공장도 부서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안전관리팀과 달리 메인 부서 사람들은 활기가 넘친다.
그들에게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공장을 돌린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들이 네발자전거의 큰 바퀴라면
김부장은 자신이 보조 바퀴 같다는 생각을 한다.

굳이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사람
법이 없었으면 굳이 없어도 되는 조직. 그 조직의 팀장. 그게 나다.



—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중에서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법령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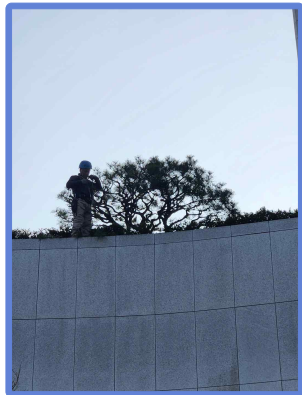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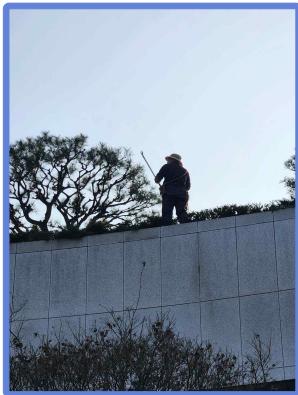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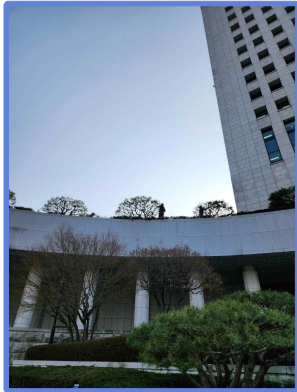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구축 및 이행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의 핵심
- 위험 작업별 상시적, 주기적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만들고 경영책임자는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
 - － 특히, 경영책임자는 점검을 통하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일상화된 제도이자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함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3호)

실행방법

- 유해·위험요인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파악하고 기록
 - － 사업장별 위험 기계·설비, 유해·위험물질 등의 리스트를 작성, 위험장소 및 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작업방식을 감독하거나, 위험작업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행정적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전담조직의 예고없는 현장 점검**도 등 절차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
- 종사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작업은 **핵심 안전규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 (ex: 글로벌기업 Shell의 “9 Life-Saveing Rules”)

무엇이 잘못 되었을까요?



4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법령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취지

- 각 기업의 수준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집행

실행방법

-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필요한 예산은 필수 편성**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조치, 위험성평가에 따른 개선조치 등
- 기업 규모와 유해·위험요인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므로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성
- 편성된 예산은 계획한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4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2) 단위과제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3년 결산액	'24년 결산액	'24년 결산액
II-5-㉔ 산업안전보건관리	205,244	322,212	233,192
산업안전보건관리	205,244	322,212	233,192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법령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취지

■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평가·관리함으로써 안전·보건 조치의 실효성 제고

■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영책임자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

– 경영책임자로부터 시작되는 안전보건 경영의지가 현장의 안전보건인력(특히, 관리감독자)을 통하여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운영체계 구축 필요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실행방법

- 내부규정(위임전결)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제15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공장장, 현장소장 등이 해당)
 - 관리감독자(산안법제16조):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부서장, 직장·등의 중간관리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안법제62조):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지정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권한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부여**
-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유의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안전보건 관련 역량 확보 중요 (교육훈련, 컨설팅 등 전문가지원 적극 활용)
- 현장단위의 안전보건관리체제가 작동이 현장의 중대재해예방의 핵심
 - 경영책임자로부터 시작되는 ‘기업 전체’, ‘본사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로 현장의 체제 작동을 확행할 필요

6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법령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u>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u> 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취지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을 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
실행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에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이 배치되었는지 확인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지 않고 외부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전문기관의 <u>조언을 사업장에서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보고받고 확인</u>
유의사항	■ 안전,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수 있도록 조직 내 권한 부여 필요

7 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령 제4조 제7호)

법령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취지

- 현장의 잠재된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 종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업문화를 통해 노사 간 신뢰 형성, 이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쉽게 해결

7 종사자 의견 청취 (시행령 제4조 제7호)

실행방법

- 온라인 신고 시스템, 간담회, **작업 전 안전미팅(TBM)**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참고> 작업 전 안전미팅 활동(TBM)

○(개요) 작업시작 전, 현장에서실시하는 회의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방법 등을 논의하고 결정

○(운영방법) 관리감독자는 주요 위험요인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의 유도

－ 당일 작업의 구체적인 순서와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논의

－ 위험요인별 통제 방안 등 안전한 작업 방법 논의 및 결정

－ 관리감독자는 관행화되어 있는 불완전작업형태에 유의하며 안전 작업을 지도

- 산안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24조) 도급 관련 안전보건협의체(제64조)를 운영

- 종사자들이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신고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

유의사항

- 종사자 참여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 전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함

- 종사자의 의견 청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등 마련 (시행령 제4조 제8호)

법령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취지

- 재해발생 초기 준비된 시나리오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 재해원인 분석·공유, 재발방지 대책 등 추가 피해 방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매뉴얼 등 마련 (시행령 제4조 제8호)

실행방법

- 위험요인별 발생가능한 재해 검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는 대응 시나리오 작성
대응 시나리오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 포함
 - － ①작업중지 ②재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③위험요인 제거 ④추가 피해방지 조치
- 급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명확화
- 매뉴얼은 종사자 전원과 공유, 주기적으로 교육·훈련
- 추가 피해방지 조치: 재해 발생 사실의 공유,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

유의사항

- 간결한 매뉴얼에 따라 종사자가 내용과 역할을 명확히 알고 있는것이 유용
- 응급구조대, 응급기관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직원을 사전 지정, 비상상황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제공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9호)

법령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취지

■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충분한 작업 기간 등을 보장

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시행령 제4조 제9호)

실행방법

- **산재예방 능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사업주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평가
- 도급 등 계약서에 사업장의 안전보건확보에 필요한 조건* 명시
 - * (예)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출, 표준작업계획,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정기 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비상훈련
-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과 작업 기간* 등을 보장
 - * 건설업 공사기간, 조선업 건조기간 등

유의사항

- 계약담당 부서와 안전담당 부서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수급업체**를 선정
 - － 저가 수주는 안전능력이 고려되지 않을 우려 (안전능력은 필연적으로 비용을 부담)
- 도급 사업주도 위탁업무 수행 시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감독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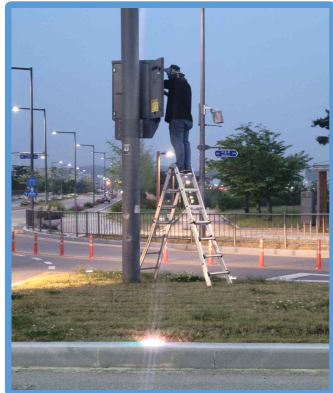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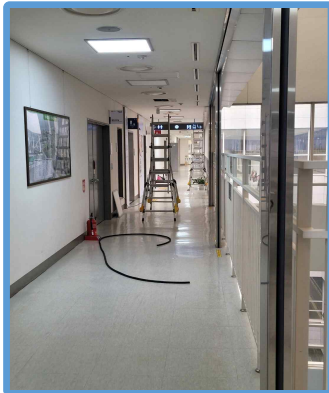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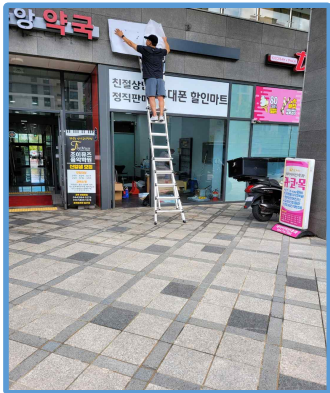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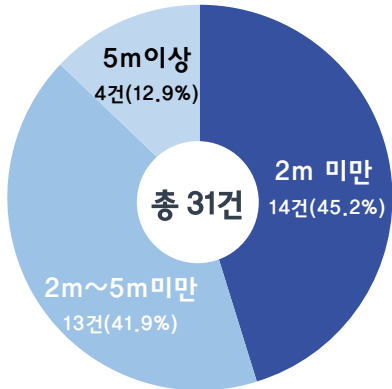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령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u>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u>
취 지	■ 발생한 재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유사한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실행방법	■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신속하게 조사·분석 ■ 경미하지만 반복되고,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재해도 포함 * (예) 한 부서에 여러 명이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발생한 경우 ■ 경영책임자가 직접 관련 책임자로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 받는 것이 효과적
유의사항	■ 아차 사고도 종사자에 해당 내용을 제출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면 중대재해 사전 예방 가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다리에서 떨어짐” 중대재해 발생 현황 ('22년)



- 공동현관 출입구 등 A형 사다리에서
- 차양막 설치작업 등 A형 사다리에서
- 조명설치 공사현장 등 사다리에서 떨어짐
- 나뭇가지를 자르는 사다리에서 떨어짐
- 천장 청소작업 중

안전관리자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

사다리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작업에 한하여	■ 경작업, 고소작업(비계 등)에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 * 경작업 : 손 또는 발을 기둥에 사용하는 작업(아래서 천구공제 작업, 전기통신 작업, 평판의 고정 조공 작업 등)	
평탄·견고한 바닥에서	■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3.5m 이하의 A형 사다리를 사용하여	■ 최대높이 3.5m 이하 사다리(조립형 포함)에서만 작업 * 보조일대원(사다리, 인솔형(경행형)사다리, 평판형 사다리(일대원)을 일대원으로 일대원 사용자는 사용 가능	
보수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 모든 사다리의 작업 시 안전모 착용, 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 작업높이 :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	
2인 1조로 작업하세요!	■ 작업높이가 바닥 연으로부터 1.2m 이상 ~ 2m 미만 : 2인 1조 작업, 최상부 평판에서 작업 금지 ■ 2m 이상 ~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 본 자료는 안전보건청 홈페이지(www.kosha.or.kr) →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법 령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u>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u>
취 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시정을 명령하는 사항은 그 시점에서 법 위반 사항이므로, 최대한 빨리 시정
실행방법	■ 중앙행정기관등이 개선 또는 시정을 명했다면, 경영책임자등에게 보고하는 절차 마련 ■ 본사 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 지정한 사항은 기한 내에 신속히 이행 ■ 지방노동관서 감독, 안전보건공단의 패트를 점검 등에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정한 내용은 반드시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 ■ 개선·시정명령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 경영책임자는 이행 여부를 반드시 보고받고 확인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법령

1.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취지

- 경영책임자등은 인력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법령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대부분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은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내용
→ 현장의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경영책임자가 관리하라는 취지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2호)

실행방법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자체 점검 역량이 부족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것도 가능
– 자체 또는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결과는 지체없이 경영책임자에게 보고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의 배치,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 수행

유의사항

- 경영책임자는 현장에 산안법상 의무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 받고 미이행시 이유를 찾아 개선해야함
- 점검은 현장에서 법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작업계획서대로 하는지를 확인 (문서상으로만 점검 X)
- 대행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은 대행기관의 보고서를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보고 받을 것

2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법령

3.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취지

■ 안전한 유해·위험작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ex)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총 39개 종류의 작업)

② 항공안전법상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항공안전법 제72조), 선박안전법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선박안전법 제41조의2) 등

2 안전·보건 교육 실시 점검 및 조치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제4호)

실행방법

-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 및 **제어방안** 교육
- 사업장 내 모든 종사자가 대상이므로
 - 수급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 교육받지 않은 종사자는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음
- 경영책임자등은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 점검 결과를 보고 받아야함
 - 실시하지 않은 교육이 있다면 이행 지시, 예산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 실시

유의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서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교육 의무 제외)
- 교육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Ⅲ. 기업 대응전략

중처법 재판 1심판결 현황(30건)

[개요]

No.	선고	업종	재해 유형	형량 (원청 대표이사 기준)
1호	230406	건설업	떨어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2호	230426	제조업	물체에 맞음	징역 1년(실형, 법정구속)
3호	230623	건설업	물체에 맞음	징역 1년(집유 3년)
4호	230825	건설업	끼임	징역 1년(집유 3년)
5호	231006	건설업	물체에 맞음	징역 1년 6월(집유 3년)
6호	231012	공동주택관리업	떨어짐	징역 8월(집유 2년)
7호	231018	건설업	무너짐	징역 1년 2월(집유 3년)
8호	231103	제조업	중독	징역 1년(집유 3년)
9호	231109	제조업	베임	징역 1년(집유 2년)
10호	231117	건설업	끼임	징역 1년(집유 2년)
11호	231121	건설업	떨어짐	징역 1년(집유 2년)
12호	231221	건설업	끼임	징역 6월(집유 1년)
13호	240116	제조업	끼임	징역 1년 2월(집유 2년)
14호	240207	건설업	떨어짐	징역 1년(집유 2년)
15호	240404	제조업	끼임	징역 2년(실형)
16호	240424	건설업	감전	징역 1년(집유 2년)
17호	240502	건설업	떨어짐	징역 1년(집유 2년)
18호	240704	제조업	물체에 맞음	징역 1년 6월(집유 2년)
19호	240808	건설업	떨어짐	징역 1년(집유 2년)
20호	240820	제조업	떨어짐	징역 2년(실형, 법정구속) + 벌금 20억 원
21호	240821	건설업	떨어짐	징역 1년(집유 2년)
22호	240827	공동주택관리업	떨어짐	징역 8월(집유 1년)
23호	240910	제조업	끼임	벌금 3,000만 원
24호	240926	제조업	끼임	벌금 5,000만 원
25호	241007	제조업	끼임	징역 1년(집유 2년)
26호	241016	건설업	끼임	무죄(적용 유예)
27호	241016	건설업	무너짐	징역 2년(실형, 법정구속)
28호	241016	제조업	끼임	징역 9월(집유 1년)
29호	241030	건설업	무너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30호	241127	폐기물처리업	화재 폭발	징역 10월(집유 1년)

[형량별]

판결 유형	건수	비율(%)
징역(실형)	4건	13.3%
징역(집행유예)	23건	76.7%
벌금형	2건	6.7%
무죄	1건	3.3%
총계	30건	100%

- ✦ 징역형(실형+집행유예)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법원이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 벌금형은 2건(6.7%)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한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중처법 재판 1심판결 현황(30건)

[재해유형별]

재해 유형	발생 건수	비율(%)
떨어짐(추락사고 포함)	11건	36.7%
끼임	9건	30.0%
물체에 맞음	5건	16.7%
무너짐	3건	10.0%
감전	2건	6.7%
중독	1건	3.3%
화재 폭발	1건	3.3%

- ✧ 건설업의 주요 재해 유형은 '떨어짐(추락)'으로 전체 사고 중 36.7% 차지
- ✧ 제조업에서는 '끼임' 사고가 가장 많음 (30.0%)
- ✧ 물체에 맞음(16.7%)과 무너짐(10.0%)도 주요한 산업재해 유형으로 나타남

중처법 재판 1심판결 현황(30건)

[중처법 시행령 제4조 각호별 적용빈도]

조항	설명	적용 건수	비율(%)
제1호	안전보건 방침 설정	8건	26.7%
제2호	안전보건 점검·감독 직책 설정	2건	6.7%
제3호	유해위험요인 선제적 파악 및 이행 점검	23건	76.7%
제4호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6건	20.0%
제5호	안전관리 전담 책임자의 업무 수행	21건	70.0%
제6호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법정 의무)	1건	3.3%
제7호	안전보건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10건	33.3%
제8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구축 및 점검 보고	7건	23.3%
제9호	도급 시 산재예방 평가기준 마련 및 점검	9건	30.0%

중대재해 판결사례(창원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2고단 1429)

■ 사고개요 및 의의(제조)

- 세척제(A기업 공급) 사용 B기업은 10명(협력업체 포함 16명), C기업은 13명 독성 간염(질병)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로 기소된 사건(최근 1심 판결)
- 똑같은 유해화학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 중대재해 발생
- B기업은 중대법 적용, C기업은 중대법 미적용

■ 처벌(1심)

	지위	적용법률	형량
A 기업	대표이사	화학물질관리법, 산안법, 형법 등	징역 1년
	법인	화학물질관리법, 산안법 등	벌금 3천만원
B 기업	대표이사	중처법, 산안법, 형법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법인	중처법 및 산안법 등	벌금 3천만원
C 기업	대표이사	산안법, 형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법인	산안법	벌금 1천만원

중대재해 판결사례(울산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2고단 4497)

■ 사고개요 및 의의(제조)

- 자동차부품제조업(60명)으로 내부금형 청소작업 중 기계 가동으로 금형사이 머리가 협착 사망
- 방호장치 고장, 인터락 미설치 등 수차례 사고 위험 지적에도 불구하고 미시정 중 사고 발생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등 중대법 시행령 조항 4개 위반(중처법 적용)
-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여 징역 2년 선고(현재까지 처벌수위가 가장 높음)

■ 처벌(1심)

지위	적용법률	형량
대표이사	산안법, 중처법	징역 2년
이사	형법(업무상과실치사)	금고 1년 6월
법인	산안법, 중처법	벌금 1억 5천만원

■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2022.2.26 발생, 2024.8.8 선고)

- 관리감독자 지휘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작업에서 **안전난간없는 이동식 비계(1.8m)에서 추락 사망**
- 안전이동통로 미확보, 안전모 미착용 등 책임 ⇒ 유족합의, 피해자 과실 등 고려하여 양형 결정
-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 현장소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전주 사옥신축공사(2023.3월 발생, 2024.8.21 선고)

- 벽체평탄화 작업을 위해 이동식비계에 올라가다 16m 아래 **추락 사망**
-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 반성, 유족합의, 사고후 재발방지 노력 등 고려하여 양형 결정
- 대표이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8천만원, 현장소장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중처법 기소 및 판결 분석

- 검찰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9개 항목) 여부, 경영책임자등 고의성 및 인과관계 등이 있는 경우 기소
- 법원은 산안법상 의무이행에 그치거나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반적 절차만을 규정하거나 형식적인 의무 이행은 의무불이행으로 판단

□ 시행령 제4조제1호(안전보건 경영방침)

- 산안법 제1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과 달리 작성, 중대법 시행령 구체화등 실질적, 구체적 방안 포함
-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와 경영방침 인정
-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및 규모 고려, 반복적 재해 감소를 위한 경영적 차원의 노력, 구체적 대책방안 반영 필요

□ 시행령 제4조제2호(전담 조직)

-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할 수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요건갖출 필요, 적어도 조직 구성원의 상당수가안전·보건과 무관한 생산관리 등 안전·보건과 목표 상충이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시행령 제4조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 최소한 산안법 제36조와 그 위임에 따른 지침이 규정하는방법과 절차·시기기준및 현장 특성 반영 필요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에는 유해·위험요인 확인시작업의 중단, 실효성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의 마련과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산안법 제36조에서 정한 위험성평가 방식과절차에 준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
- (“확인” 절차)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장 위험요인 발굴·신고할 수있는창구 및 실제 위험 작업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포함 필요
- (“개선” 절차) 유해·위험요인 체계적 분류·관리 및 유해·위험요인별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포함 필요

□ 시행령 제4조제4호(예산 편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다 폭넓은 예산편성의무 부담 필요
-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구비를 위한 비용 모두 포함 필요

□ 시행령 제4조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과 그 충실도 반영 및 구체적·세부적으로 평가 기준 마련 필요

□ 시행령 제4조제7호(종사자 의견 청취)

- 수급인 근로자, 특고, 1인 자영업자 등 노무 제공하는 사람의 의견청취 절차마련 필요, 종사자 의견 청취 후 의견 반영 여부판단을 위한 방식, 절차, 기준 마련 필요
- 단기로 들어오는 업체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안전보건협의회는 중대법 시행령 단서에서 정한 안전보건 협의체에 비해당
-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절차인 TBM**도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라고 할 수 없으며, 절차는 관련 종사자의 인지필요
- * TBM 절차 자체를 일률적으로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음

- 법원은 양형 결정 시 위반정도, 과거 산안법 처벌, 과거 중대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태도, 안전대행기관 상태보고서 이행 정도, 피해자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법 위반 사망사고, 100% 예방할 수 있고, 예방비용이 제일싸다!(인식의 전환)

- 1:29:300 법칙(하인리의 법칙), “재수없어 사고 발생 < 재수 좋아 사고 미발생”

- 중대재해는 위험한 행동(안전수칙 미이행)과 상태(위험한 작업환경과 설비 등)의 결합, 산안법이 규정한 **3중**

안전망(안전시설, 보호구, 관리감독) 모두가 뚫렸을 때 발생

-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특히, **위험성평가**를 통한 **참여형, 상시 유해.위험요인**
의 확인 개선활동(제거, 대체, 통제, 관리방법)과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중요 > **안전문화 연결**

* ①사업주+근로자, ②위험성 판단.결정+개선대책 마련.이행, ③평가방법 다양화(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수준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 정부 등 지원제도 적극 활용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정지원 사업 활용(기술지원+컨설팅+공동안전관리+시설.장비 지원) 등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금속 제조업 등 20개 직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 표, 산재예방지원사업 안내,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중대법 대비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 등 다양한 자료

- **경총, 중기업 「중처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안내서」 발간**

■ 제언

- 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본사 및 현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형식적 + 실질적 측면 동시 고려**)
 -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업체 실정에 맞게 구축·운영(관리감독자 평가, 수급인 선정 등 간접 통제)
 - **대표이사의 중대재해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및 적정 역할 수행**
 - 공단의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활용
- ② **현장의 근로자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내재화)**
 - 근로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식 개선, 실질적인 근로자 참여를 기반으로 한 위험성 평가 실시, 아차사고 발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노사 참여 안전문화 실천 캠페인 전개 등
 -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관리 및 교육 강화**
- ③ **상시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유해위험요인 상시 감측·제거**
 - 건설업 상시평가 중심의 위험성평가 실행 안내서, 동영상 등 참조 활용
 - **중대재해사이렌 적극 활용** ⇒ 유사재해 예방대책 마련
 - 건설업 안전관리비 인상(평균 19% 인상), **안전관리자 양성 사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등 활용
 - * 건축, 토목 중급기술자 등에 건설업 안전관리 교육(84H) ⇒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120억 미만 현장)
 - 분리발주 의무 대상 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는 실무경력을 갖춘 해당분야 전문가 등 안전관리자 자격 부여 추진 중
 - ** AI 인체 감지 CCTV 스마트 안전장비('25), 스마트 화재감지센터, 화학물질 누출 감지 센서 등(지원비율 단계적 인상)

■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중대법 시행령 제4조제5호)

- **작업현장에서** 작업진행과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①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명확히 알고**,
②해당 유해·위험요인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가 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관리**
-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가 작업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것이 중대재해 예방의 지름길**

■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3단계

(1단계)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후 유해·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사항 결정**

(2단계) 유해·유해요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에 대한 구체적 역할 부여** 및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지원하는 등 수행 지원

(3단계) 관리감독자가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 **확인·평가하여 관리**

매일노동뉴스

편집: 2024-05-20 15:49 (월) | 로그인 | 회원가입 | 홈페이지

노동 정치·경제 사회 사람&문화 안전과 건강 기획연재 오피니언 노동사건 따라잡기 출판

구은희의 무사안일

기업을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

구은희 | 입력 2024.04.22 07:30

댓글 0

0 0 0

세월호 참사로부터 10년이 지났다. 세월호를 통해 우리는 위험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위험으로부터의 신속한 대피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수칙이다. 작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무사안일> 열 번째 사연은 일터에서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한 '노동자 작업중지권'에 대한 이야기다.

삼성의 작업중지권

삼성물산이 최근 언론의 재조명을 받았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1년 3월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다. 삼성물산이 진행 중인 국내외 113개 건설현장에서 지난 3년간 30만1천355건의 작업중지가 이뤄졌다. 5분에 한 번꼴이다. 주로 중독·협착(31%)·추락(28%)·장비 전도(24%)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작업이 중단됐다. 작업이 재개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시간 이내가 대부분(89.1%)이다.



▲ 구은희 일한정건강센터장

《사례:삼성물산 건설부문》

- '21.3부터 건설현장에서 3년간 30만 1천355건 작업중지권 행사
- 작업재개까지 걸린 시간은 1~2시간 이내가 대부분(89.1%)
- 휴업재해율이 (21) 0.207% ⇒ (23) 0.129%로 대폭 감소
- 작업중지에 따른 공기지연, 인력 추가투입 등 부담은 원청이 부담

* 작업중지권(산안법)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제언》 제안제도, 근로자 작업중지, 노사 캠페인 등 **근로자 참여**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상시발굴.개선 (안전문화 내재화)**

□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권

- 노동자(관계수급인 노동자 포함),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구

□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건 완화

- 산재 발생 급박한 위험 ->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 중대재해 + 중상해재해 발생시(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의식불명, 생사불명 등)

□ 시정조치 미이행시 사업주의 작업 중단 의무

- 시정조치 미이행시 중대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정 완료까지 사업주의 작업 중단 의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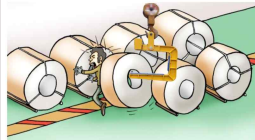
(참고)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무일시 : 2024년 5월 16일 11:40

중대재해
사이렌

'24년 5월 10일(금) 16:05경 경북 경주시 소재 OO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코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코일이 재해자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코일 사이에 끼여 사망



예방대책

· 달기구와 중량물(코일) 무게중심선 일치 및 정격하중 이내 인양작업을 하고 반드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알림

배무일시 : 2024년 5월 16일 10:50

중대재해
사이렌

'24년 5월 13일(월) 13:30경 부산시 사하구 소재 OO 조선소에서 컨테이너선 식수탱크 배관 용접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2명 사망



예방대책

· 용접, 용단 작업은 가연성물질 제거 등 안전한 상태를 확인 하고 작업을 수행합니다.



호우·태풍 대비 정보발령

중대재해
사이렌

●●● 발령일시 : 2024년 5월 14일 18:00

매년 호우·태풍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23. 7. 15. 호우로 인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사망 14명)

'22. 9. 6. '힌남노'로 인한 포항 사업장 침수 사고

금년 여름철은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으며,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호우·태풍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 기간을 호우·태풍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 호우·태풍 대비 점검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호우·태풍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여름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호우·태풍 대비 점검사항

- ✓ 재난 위험장소(토사유실, 지반약화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 및 확인을 하였는가?
- ✓ 강풍 시 날아갈 위험이 있는 자방, 간판 등은 없는가?
- ✓ 폭우 시 침수의 위험은 없는가? (배수구 점검을 하였는가?)
- ✓ 침수 시 전기감전의 위험은 없는가?
- ✓ 침수 시 오염의 유입으로 위생상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가?
- ✓ 침수대비 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 ✓ 정전대비 손전등, 양초 등 비상구조 용품이 구비되어 있는가?
- ✓ 자연재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비상 복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대응
요령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하고 대피



"알코아를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만들겠다. 사고율 제로가 목표"

- 안전해야 기업의 성과도 높아진다
- 근로자가 위험한 조직은 생산 공정에 문제가 있다
 -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성과는 낮아진다
- 오닐은 말단 직원에게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책임자가 안전수칙을 어기면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함
- 책임자는 노동자가 다치면 반드시 오닐에게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 제출
-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승진
- 재임기간('87~'00) 순이익 7.5배, 시가총액 9배,
미국평균산재율의 1/20 수준 달성(0.07)
• '24년 한국 0.54

- '알코아'社 CEO 취임사 中

ALCOA Revenue (in Billions)



1987 오닐 취임

* Source:
workclout.com



감사합니다.